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9

발의연월일: 2020. 7. 10.

발 의 자:정성호·강병원·김경협

김영주 · 김정호 · 박용진

박 정・백혜련・윤관석

윤후덕 · 이상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자체가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,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,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 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 용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 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단서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"를 "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철도시설 사용료)	제31조(철도시설 사용료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	②
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	
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	
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	
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
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	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	가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
	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
	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
	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의하여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